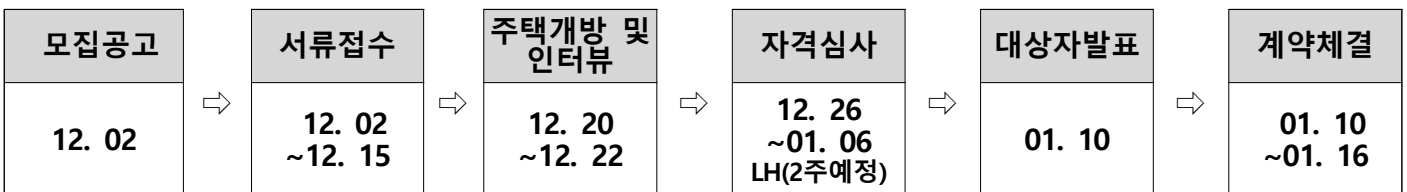


2022 LH 사회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마을과집협동조합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 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2.12.02.)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도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전년도(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22년도 변경 자산·자동차가액 기준 반영)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모집일정



-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 * 자격심사(소득/자산) 조회의 소요기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동작신협 사회적주택 보증금 대출 지원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한도 2,000만원)

· 신용등급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대출조건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주택은 운영사가 임대인으로서 전대운영 하는 주택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이 아님.(신용대출 가능)

2. 공급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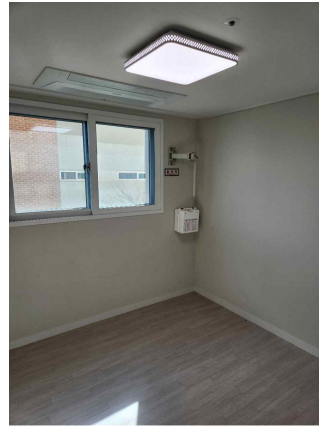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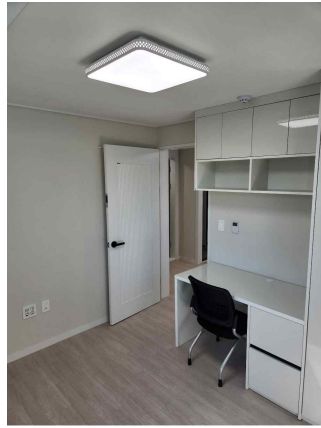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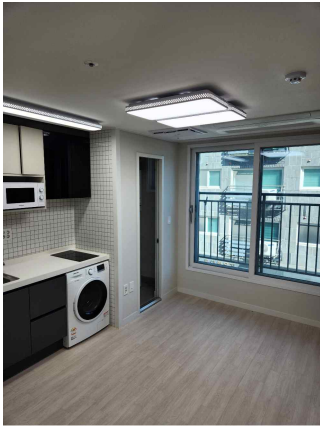
키움주택	
주 소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57(성산동)
공급 형태	19세대
제공 품목	에어컨3대, 드럼세탁기, 냉장고, 하이라이트, 옷장, 책상, 의자, 전자레인지
난방 방식	개별난방
관 리 비	8만원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 - 개별 납부
커뮤니티룸	2층 (201호)
보안시설	CCTV, 비디오폰 현관문등
부대시설	지상 1층 (무인택배보관함, 자전거거치대, 분리수거함, 주차장6대) 엘리베이터

공급대상	면적(m ²)			기본임대조건(원)		최대전환임대조건(원)		거주형태
	계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201호	31.955	25.85	6.105	6,048,000	664,354	52,548,000	431,854	커뮤니티룸
202호	33.599	27.18	6.419	6,438,000	685,000	54,338,000	445,500	투룸
203호	34.699	28.07	6.629	6,634,000	707,500	56,134,000	460,000	투룸
204호	31.72	25.66	6.06	6,048,000	659,300	52,248,000	428,300	투룸
301호	31.955	25.85	6.105	6,048,000	670,900	53,048,000	435,900	투룸
302호	33.599	27.18	6.419	6,438,000	691,900	54,838,000	449,900	투룸
303호	34.699	28.07	6.629	6,634,000	714,600	56,634,000	464,600	투룸
304호	31.72	25.66	6.06	6,048,000	665,800	52,648,000	432,800	투룸
401호	31.955	25.85	6.105	6,048,000	670,900	53,048,000	435,900	투룸
402호	33.599	27.18	6.419	6,438,000	691,900	54,838,000	449,900	투룸
403호	34.699	28.07	6.629	6,634,000	714,600	56,634,000	464,600	투룸
404호	31.72	25.66	6.06	6,048,000	665,800	52,648,000	432,800	투룸
501호	31.955	25.85	6.105	6,048,000	670,900	53,048,000	435,900	투룸
502호	33.599	27.18	6.419	6,438,000	691,900	54,838,000	449,900	투룸
503호	34.699	28.07	6.629	6,634,000	714,600	56,634,000	464,600	투룸
504호	31.72	25.66	6.06	6,048,000	665,800	52,648,000	432,800	투룸
601호	31.955	25.85	6.105	6,048,000	664,300	52,548,000	431,800	투룸
602호	33.599	27.18	6.419	6,438,000	685,000	54,338,000	445,500	투룸
603호	34.699	28.07	6.629	6,634,000	707,500	56,134,000	460,000	투룸
604호	31.72	25.66	6.629	6,048,000	659,300	52,248,000	428,300	투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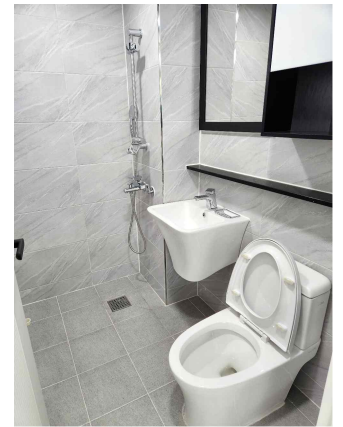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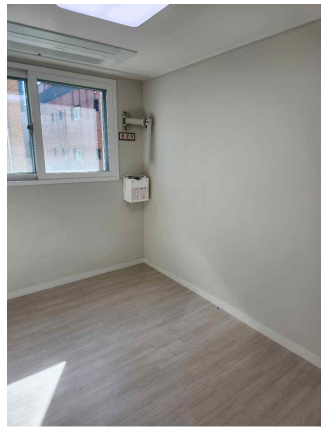
※ 공용 관리비는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세대 평균 관리비 80,000원)

※ 공용 관리비 항목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시설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소방시설관리, 생활폐기물배출,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로, 정기방역, 정화조청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내부 사진 (301호 내부)



■ 내부 사진 (302호 내부)



■ 내부 사진 (303호 내부)



■ 건물 사진



3. 입주 자격

□ **청년 중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여부와 무관
(해당공고의 경우 1982.12.03 ~ 2003.12.02. 출생자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일반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일반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8,800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확인)
 - ③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기 준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00%이하	3,212,113	4,844,370	6,418,566
	110%이하	3,533,324	5,328,807	7,060,423
	120%이하	3,854,536	5,813,244	7,702,279

- ※ 일반①의 본인 및 부모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 일반④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 일반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 자산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①	일반 ②
소득 (위의 소득기준 참고)	범위	본인 또는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수급자 등 여부 판단	검증 대상 수에 따른 기준	3,854,536원
총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2,500만원	28,800만원
자동차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557만원	3,557만원
주택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4-1. 모집일정

□ 선정원칙

- 입주자 선정의 권한은 운영사에 있으며, 운영사의 자체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름
- LH의 기본 입주자격 서류는 단순 입주자격 검증 여부에만 활용
- 주택 사전점검 및 면접과 설문조사에 불참 시 입주 대상자 선정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분	내용
● 공동체생활 적합성	소통역량과 적극성, 갈등 해소 대체능력, 규칙 준수
● 거버넌스(자치, 협치) 선호	공동주택 운영 참여의 적극성
● 주거 시급성	소득, 신청자 생활여건의 필요성, 기존 주거환경 현황
● 지속주거 가능성	주거계획 구체성, 장기거주 선호도

□ 선정방법

- 주택 사전방문시 설문조사 링크 안내 → 선정기준과의 적합성 정량 평가
- 주택 사전 점검 시 선정기준에 대한 면접 진행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정량(설문조사) 및 정성(면접)평가 합산 → 최종 대상자 선정(예비순위 3배 수 선정)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입주신청	- 입주희망자 신청서류 접수	- 접수 기간내
현장투어	- 서류접수자 대상 현장투어	-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입주대상자 선정	- 1순위 및 예비순위 대상자 선정	- 인터뷰 및 설문내용을 통해 선정, - 모집 호수의 3배수 선정
LH서류송부	- 선정자 서류 LH 송부→자격검증	- 대상자 선정 후 2일 이내
자격심사결과수령	- 최종 입주대상자 확정	- 서류 송부 후 약 2주 소요(LH 일정 유동적임)
입주대상자 발표	- LH 자격기준 통과자 - 1순위 대상자중 자격 탈락시 예비 순위 신청자 선정	- 최소 2회 이상 전화, 최종 문자 발송 후 24시간 이내 입주의사 없을시, 입주자격 박탈 → 예비순위 대상자 승계
계 약	- 계약금 납부	- 24시간 이내 계약금 미납 시 입주자격 박탈 가능
입 주	- 잔금납부	-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호실 결정

4-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절 차	일 정(예정)	내용 및 공지	비 고
서류접수	22. 12. 02 ~ 22. 12. 15	우편접수	마감일(2022.12.15.) 등기 접수분까지 인정
주택개방 및 인터뷰 진행	22. 12. 20 ~ 22. 12. 22	홈페이지 / 개별안내	입주 대상자 3배수 선정
자격심사	22. 12. 26 ~ 23. 01. 06 (LH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홈페이지 / 개별안내	입주대상자 서류 LH 송부
대상자 발표	23. 01. 10	개별 안내	
계약체결	23. 01. 10. ~ 01. 16.	개별 내방	마을과집 명동 지사

※ LH자격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3. 신청서류 접수방법

구 분	내 용
우 편 접 수	마감일(2022. 12. 15) 등기 접수분까지 인정
발 송 주 소	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0길 35-4 전진상 교육관 內(내) 마을과집 내사회적주택 입주담당자 앞
문 의	010-3968-7410 <주중 근무시간(9시~18시) 내에 문의 가능 ※ 주말 공휴일 제외>

5.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유형(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한부모가족, 일반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안내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 한부모가족, 일반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㉓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㉔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제공 (붙임양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일반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붙임양식)
일반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일반 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붙임양식)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7.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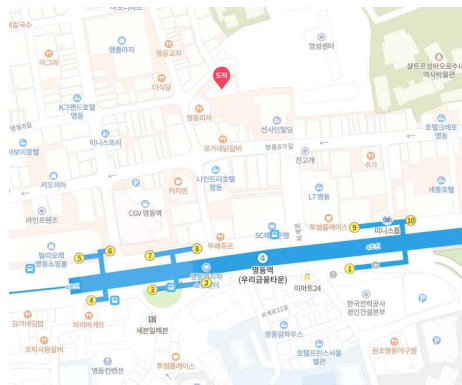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자산 소명은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일반①, ②)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조회결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 됩니다.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임대인(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청년</td> <td>6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기간 중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6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6년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여부 및 가능범위는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8. 문의처 및 접수처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10길 35-4 (전진상교육관내 마을과집 협동조합)
- 지하철 : 명동역(4호선) 8번출구 도보 1분소요
- 주차 : 건물 안 주차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사항	<p>운영기관 연락처</p> <p>*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전화(010-3968-7410)등을 통해 가능합니다.</p> <p>*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전달하겠습니다.</p>
-------------	---

2022. 12. 02.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축육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 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 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금융결제원 및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임대료 부과내역 발송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8.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2.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2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을과집 2022년 LH 사회적주택 입주신청 및 동의서

■ 입주신청

성 명		연락처	
이 메 일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가구 <input type="checkbox"/> 일반 ① <input type="checkbox"/> 일반 ②
신청주택	<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57(성산동)		
신청 경로	<input type="checkbox"/>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공고 <input type="checkbox"/> 주거복지재단 <input type="checkbox"/> SNS(페이스북) <input type="checkbox"/> 마을과집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지인 <input type="checkbox"/> 네이버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회적 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1. 공동체생활 적합성

공동체 활동 경력, 규칙준수,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소음, 반려동물, 시설대기 등)를 입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나갈 의지가 있는가?

2. 거버넌스(자치, 협치) 선호

주택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공동주택 운영과 참여에 적극적이고 원래의 상태로 유지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3. 주거시급성 및 사회적 주택 입주 적합성

소득, 원주거지와 거리, 가구구성 급변 등 사회적 주택 입주에 적합한 계층여부를 고려했을 때 적합한 입주자인가?

4. 지속주거 가능성

직장, 학교 등과의 거리, 주거계획의 구체성 등을 볼 때 지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한가?

■ 입주자 선발 원칙 및 주의사항

1. 입주자 선정의 권한은 운영자에 있으며, '자체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름.
2. LH의 기본 입주자격(서류)심사는 단순 입주가능 자격 보유 여부의 확인에만 활용.
3. 입주자 선정 최종 공지 후 입주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으면 입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입주희망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미선정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주택개방시 입주 담당자의 면담, 신청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자가 결정함.
6. 입주자 최종선정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주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회적주택은 소유주(LH)와 임대인(마을과집협동조합)이 다르므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 함.
 ※ '마을과집 협동조합이 사업협력 협약을 맺고 있는 '동작신협' 대출은 가능함.
8. 우편 접수된 사회적주택 입주신청 관련 제출서류의 미비여부를 안내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음.

■ 모집일정 및 안내

- 공고문을 통해 모든 입주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위 사항에 대하여 잘 안내받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입주기준에 동의합니다.

202 성명 _____ (인)

마을과집 협동조합 이사장 귀하